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의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 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128
정보공개서최초등록일 - 2008.08.02.
정보공개서최종등록일 - 2024.12.05

www.d-deli.co.kr
webmaster@d-deli.co.kr

[디텔리] 정 보 공 개 서

(주)디엔에프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
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
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
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
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
시기 바랍니다.

(주)디엔에프씨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 5층 502호(장안동, 인경빌딩)

전 화 : 02-533-1194 / FAX : 02-596-6249

가맹사업담당부서 : 가맹사업부 (전화 : 02-533-1194)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별첨 서류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주)디엔 에프씨	디텔리 외1개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 5층 502호 (장안동, 인경빌딩)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04.10.15	2004.10.15	2004.09.15	김정수	02-533-1194	02-596-6249
	법등록번호	110111-3099820		사업자 등록번호	108-81-68400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 / 이름	사용 브랜드	주소		
사내이사	김정수	디텔리 외1개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 5층 502호(장안동, 인경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수	02-533-1194	02-596-624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디텔리]	매일 맛있는 것을 먹는다는 의미
상 호	[디텔리] ()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출원번호(출원일자) : 4020230198620(2023.11.02)
그 밖의 영업표지		광고 등 영업에 사용되는 로고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3,052,917	826,859	2,226,058	5,880,507	2,656,587	2,267,982
2022	4,308,922	539,906	3,769,016	5,491,015	2,146,414	1,842,957
2023	5,316,822	467,160	4,849,661	5,662,218	1,182,965	1,080,645

▶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현 임원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관련	김정수	대표이사	2018.08.26~현재	(주)디엔에프씨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0	3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가맹사업기간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디엔 에프씨	가맹사업경영	2020.10.30. ~ 현재	20201358	담콕이라는(20201358) 외식(밀키트전문)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상표)	권리 내용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를 수령할 권리	4020230198620	2023.11.02	(주)디엔에프씨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출원중)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디텔리]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4년 10월 15일

2. [디텔리]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들이	나들이 라볶이	김현본	1997.04.28. ~ 2004.09.14.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39-36
(주)디엔에프씨	디텔리	김현본	2004.09.15 ~ 2018.08.25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4 601호 (중곡동, 선진빌딩)
(주)디엔에프씨	디텔리	김정수	2018.08.26. ~ 2021.01.3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4 601호 (중곡동, 선진빌딩)
(주)디엔에프씨	디텔리	김정수	2021.02.01.~현재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7, 5층 502호 (장안동, 인경빌딩)

3. [디텔리]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디텔리	분식	라볶이, 그라탕, 김밥 등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디텔리]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2	22	—	22	22	—	20	20	0
서울	5	5	—	5	5	—	5	5	0
부산	2	2	—	2	2	—	2	2	0
대구	0	0	—	0	0	—	0	0	0
인천	2	2	—	2	2	—	1	1	0
광주	0	0	—	0	0	—	0	0	0
대전	1	1	—	1	1	—	1	1	0
울산	0	0	—	0	0	—	0	0	0
세종	0	0	—	0	0	—	0	0	0
경기	10	10	—	10	10	—	9	9	0
강원	1	1	—	1	1	—	1	1	0
충북	0	0	—	0	0	—	0	0	0
충남	0	0	—	0	0	—	0	0	0
전북	0	0	—	0	0	—	0	0	0

전남	0	0	—	0	0	—	0	0	0
경북	0	0	—	0	0	—	0	0	0
경남	1	1	—	1	1	—	1	1	0
제주	0	0	—	0	0	—	0	0	0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의 수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4	0	2	0	0	22
2022	22	0	0	0	0	22
2023	22	0	2	0	1	20

6. [디텔리]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현황

당사는 [디텔리] 가맹사업 외에 현재 영업 중인 직영 및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상호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사업 시작일	직영점/가맹점의 수(단위:개)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본부 /주디엔 에프씨	담꼭	20201358	한식 (밀키트판매전문점)	2020.10.30.	1/422	0/464	0/363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당 연간평균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2023년)에 영업한 가맹점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 년말 가맹 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상한)		연간평균매출액(하한)		비고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20	97,665	6,599	186,093	22,506	4,378	183	19곳
서울	5	해당없음	—	—	—	—	—	4곳 미만
부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0	해당없음	—	—	—	—	—	—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0	해당없음	—	—	—	—	—	—
대전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울산	0	해당없음	—	—	—	—	—	—
세종	0	해당없음	—	—	—	—	—	—
경기	9	118,267	9,353	183,402	22,506	55,640	3,992	9곳
강원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북	0	해당없음	—	—	—	—	—	—
충남	0	해당없음	—	—	—	—	—	—
전북	0	해당없음	—	—	—	—	—	—
전남	0	해당없음	—	—	—	—	—	—
경북	0	해당없음	—	—	—	—	—	—
경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제주	0	—	—	—	—	—	—	—

※ 6개월이상 영업한 매장 19곳 및 포스 또는 가맹점신고매출 기준

※ 가맹점이 위치한 지역 및 상권, 실제 매장의 크기, 실제 운영한 영업개월 수,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이 상이하므로 전국 평균 매장의 평균 매출액이 아니며, 귀하가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디텔리] 브랜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
2023년	20	5,098

9.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및 관리 가맹점 수
당사는 현재 [디텔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디텔리 및 담꼭]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5]쪽을 참고 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023.01 ~ 2023.12	165,096	165,096		
광고	소개		165,096	165,096		
	TV	—	—	—		
	전단지	—	—	—		
판촉	소개	—	—	—		
	판촉행사	—	—	—		

※ 위 금액은 (주)디엔에프씨의 2023년 말 기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내역이며, 이 금액은 당사가 운영하는 『담꼭/디텔리』 브랜드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각 브랜드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상호, 담당 지점이나 부서의 이름과 소재지, 안내 전화번호

예치기관의 상호 및 담당지점	예치기관의 소재지	예치기관의 전화번호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지점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92번길 14	031-542-3810

2) 가맹금 예치 절차

귀하는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중 가까운 곳에 신분증 및 가맹금예치금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해당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는 안내받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귀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 관련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디텔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 철거, 냉난방기, duct,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 화장실, 상하수도, 소방, POS, CCTV 등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대상	지급 기한
최초 가맹금	5,500	가맹본부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본부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교육비	3,300	가맹본부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개점 홍보비	2,200	가맹본부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	—	—	
가맹비(가입비)	5,5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개점전 계약해지	영업 개시로 인한 소멸	
최초교육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교육전 계약해지	교육 종료로 인한 소멸	
개점홍보비	2,2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개점전 계약해지	영업 개시로 인한 소멸	

2) 계약이행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	—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이나 대금의 미지급 등	
보증보험	필요시 가입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입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이나 대금의 미지급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입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귀하의 가맹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의 가맹금 예치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며 귀하의 가맹금 예치대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합계	13,000	
가맹비	5,500	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	부가세 포함
개점홍보	2,200	부가세 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대상	지급 기한	반환 조건	비고
총계	64,020	4,268		—	—	점포면적 49.5㎡ 이하 기준
인테리어	33,000	2,200	협력업체	별도 계약	별도 계약	점포 내부공사 기준
간판 및 사인물	11,000	733	협력업체	별도 계약	별도 계약	전면 간판 및 내/외부 사인물 등
주방기기& 설비&집기	20,020	1,335	협력업체	별도 계약	별도 계약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비용 내역에는 철거, 냉난방기, 덕트,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 화장실, 상하수도, 소

방, POS, CCTV, 의탁자 등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양,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자체 시공 시 디자인과 Lay-out도면 제공 및 인테리어 공사의 노하우 제공의 대가로 수도권은 금 사백사십만원[₩ 4,400,000(부가세포함)], 수도권 이외의 광역지역은 추가비용을 협의하여 공사착수 전일 까지 당사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필수 구입 내역 : 초도물품 일체는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 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첨 3)참조]

(3) 그 밖의 영업신고, 테라스, 사업자등록, 전화 개설, TV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위 금액은 오픈하고자 하는 매장 환경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오픈예정 매장실측 이후 안내할 수 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반환할 수 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의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동행답사 → 현장조사 등 시장조사 및 협의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단,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가능 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가능 자	- 가맹점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디텔리]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가맹금 등 분납 제도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에 대한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5]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	------	----	------	------	-------------	----

로열티	당사	매월33만원	익월10일까지	해당없음	경과된계약 기간은소멸	지급방식: 자동이체(cms)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당사	협의분담	별도 통지	별도 통지	별도 통지	
관측 분담금	당사	협의분담	별도 통지	별도 통지	별도 통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해당없음				
교육 훈련비		실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협력업체	실비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음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당사	연 12%	발생 시			현금성 채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제3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류를 공급하는 관계로 귀하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감독항목	내용	시기	비고
매장운영 전반감독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감독	수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재고관리 회계처리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감독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중단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

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디텔리]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당사가 이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본 계약이 해지, 기간만료, 갱신의 거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귀하는 아래의 각항의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귀하는 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간판 등 제반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귀하는 기타 당사의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중, 비품·소모품 등은 당사에게 반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시설·설비 등은

당사와 귀하는 이 상호협의를 하여 처분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받은 매뉴얼, 문서, 도면, 도서 등 관계서류 일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귀하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귀하는 이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경우 무단상표 사용에 해당되며, 귀하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8. 본 계약의 종료 시에 귀하는 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완전물이 있는 경우에 귀하는 당사에게 공급가격으로 반품 내지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세부사항

귀하가 [디텔리]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가 [디텔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거래형태는 [별첨3]과 같습니다.
- ▶ 차액가맹금이 없는 경우, 당사는 경제적이의 형태로 수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 귀하가 [디텔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한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별첨4]과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 귀하가 [디텔리]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이에스프레시	사용인(대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 위 매출총액은 디텔리와 담꼭의 원부재료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디텔리]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라볶이 5종	귀하는 당사의 브랜드 보호를 위하여 좌측에 기재된 상품만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 1회 위반 : 1주일 전 서면통보 후 물품중단 ▶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므로 본 정보공개서에서 표시하는 품목 외에도 추가로 판매품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김밥 5종			
계절메뉴 2종			
사이드 6종			
음료 5종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각종 원·부재료 등의 물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을 고객판매 용도 외에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회 위반 : 1주일전 서면통보 후 물품중단 ▶ 2회 위반 : 서면 통보 후 시정요구(최후통첩) ▶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통보방법	비고
디텔리 라볶이	7,500(1인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문 발송	본사와 사전 협의 이후 변경 가능함 (2024.07기준)
대파커리 라볶이	8,000(1인분)		
땅콩마라 라볶이	9,000(1인분)		
갈릭로제 라볶이	9,000(1인분)		
고르곤크림 라볶이	9,000(1인분)		
디텔리 김밥	4,000(1인분)		
참치 김밥	5,500(1인분)		
치즈 김밥	5,500(1인분)		
와사비 크래미 김밥	5,500(1인분)		
냉모밀	7,000(1인분)		
냉라면	7,000(1인분)		
대파튀김	1,500		
김말이	2,500		
새우튀김	3,000		
어니언링	3,500		
감자튀김	3,500		
참치마요밥	4,000		
미숫가루	3,900(1인분)		
복숭아 아이스티	3,500(1인분)		
청포도 에이드	3,500(1인분)		
레몬 에이드	3,500(1인분)		
자몽 에이드	3,500(1인분)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종 또는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디텔리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점포입점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나)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다)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디텔리]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디텔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연간국내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단위:%)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단위: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단위: %)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디텔리]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시에도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디텔리]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
▶ 귀하가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허용한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귀하가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 귀하가 당사의 정당한 감독 및 시정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귀하가 회계자료 통보나 관련조항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귀하가 물품대금 등을 연체한 경우
▶ 귀하가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귀하나 귀하의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귀하가 광고나 판촉행사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시설의 보수·교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 귀하가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 귀하가 가맹점 개점승인을 받지 않거나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귀하가 제3자나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 귀하가 영업의 양도나 상속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다만, 아래 표의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없이 계약서 제3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 등으로 지불정지가 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갑”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 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귀하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营业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정당한 이유 없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가 계약내용을 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 적격성 기준 및 가맹점 운영 기준에 적합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양도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02-533-119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용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경영, 위탁경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수 없으며 가맹점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으로 통지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승인에 관한 절차는 양도 절차에 준용한다. 가맹비는 면제하되 교육은 이수해야 한다.
대리경영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및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 로 대리경영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거절 시 구 체적 사유 명시) → 승인시 대리 경영	—
위탁경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기간 중에 당사의 승낙없이 [국내 전 지역]에서 귀하(직계존비속 포함)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디텔리]와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운영 등)의 영업방식 및 영업형태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 당사가 판매하는 분식 품목 또는 영업방식과 동일한 외식업종 및 이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사업	당사는 경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 당사 (02-533-119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디텔리]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영업시간	권장 영업일수	비고
11:00 ~ 21:00	주7일 원칙	문의 : 당사 (02-533-119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귀하는 당사의 서면승인을 얻은 경우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당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권장 종업원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 고
2.5명	대체근무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등	점포면적 49.5㎡ 기준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재료준비 및 가공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준비상태 확인 → 미비점 수정 및 재교육 → 완료	수시방문	당사
메뉴 조리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조리상태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의무사용 품목 사용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운영상태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표준레시피 준수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상태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위생/청결/서비스 운영관리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준수상태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디텔리] 브랜드의 이미지 재고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당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제시) → 가맹점의 광고 등 참여 여부 결정(광고의 경우 가맹점 50%이상, 판촉의 경우 가맹점 70% 이상 동의)	대중 매체
	상품 광고 +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가맹점 모집 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개별 행사		팜플렛 · 카달로그 · 전단지 등의 비용은 당사가 부담	경품 · 기념품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지역내 광고
판촉 전체 행사		할인판매의 경우 당사가 할인비용의 50%분담	할인판매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할인비용의 50%분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연간 행사 계획

-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습니다.(광고는 가맹점주의 비율 :50%이상, 판촉행사는 가맹점주의 비율 :70%이상의 동의)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의 승인을 얻어 광고나 판촉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전단지, 카달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 [디텔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

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 및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와 당사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5조(자점매입의 금지)를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35조(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디텔리]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금)로 지난 6개월간 평균월매출액 $\times 5\%$ $\times$ 잔존개월수(영업월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영업기간의 월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가맹계약서 제11조(비밀유지의무) 또는 계약 존속 중 가맹계약서 제12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씩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의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면적 33㎡ 기준)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상담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45	
사업 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잠정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가맹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D-28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7(1일)	
점포실측 / 설계	- 투자비 산출	D-26~24(3일)	
실내·외 공사착공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3(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장, 간판 등)	D-22~5(18일)	
교육 실시	- 교육 실시	D-7~4(3일)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 공급	D-6~3(3일)	
점포 개설 행사 및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개시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진행 과정에서 점포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소요금액은 철거, 냉난방기, 닥트,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 화장실, 상하수도, 소방, POS, CCTV 등과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개·보수공사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가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 당사는 귀하 등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대화에 의한 해결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나 귀하는 각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계약기간 중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비용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광고선전비	가맹점 오픈시 관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관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서 관촉인원의 수 및 관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2일간	150만원 한도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02-533-1194)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02-533-1194)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디텔리] 가맹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 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회사 소개 매뉴얼 교육 매장관리 실무 서비스 기법 등	이론 및 실습교육	영업개시일 3~5일 전	필수 교육
개점 후 교육	신메뉴 소개 및 전수 매장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교육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디텔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 (단위 : 천원)	비고
개점 전 교육	약 5일	3,300 (부가세포함)	개점 지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개점 후 교육	추후 공지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신제품 출시 및 매장 관리 등

3. 교육 · 훈련의 주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및 당사가 지정한 인원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서 18조에 따라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당사가 정한 개점 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개점을 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며,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재무상태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재무상태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손익계산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손익계산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021년 재무상태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재무상태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손익계산서-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손익계산서-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직영점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1) 구입강제품목(2024년11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2) 구입권장품목(2024년11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3)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과 결정기준(2024년11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하한-1 (2023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4)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의 상·하한-2 (2023년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